

1. 개정이유

- 가. 행정기본법 시행 및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허가의제에 관한 조항이 일괄 정비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
- 나.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라 국제회의 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명시된 국제회의 집적시설 지정대상 및 규모 기준을 별지 서식에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령 위임 사항이 삭제되면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규칙 조항(인가·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서류 제출) 삭제(제10조)
- 나. 별지 서식 ‘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신청서’에 집적시설 종류로 박물관, 미술관, 전문체육시설을 추가하고, 추가된 집적시설의 규모 기준에 대하여 명시(별지 제2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

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

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10조(인가·허가 등의 의제를</u> <u>위한 서류 제출) 법 제17조제3</u> <u>항에서 “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</u> <u>정하는 관계 서류”란 법 제17조</u> <u>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제(擬</u> <u>制)되는 허가·인가·검사 등에</u> <u>필요한 서류를 말한다.</u>	<u><삭 제></u>

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
신청인	기관 명칭	사업자등록번호
	주 소	전화번호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
집적시설 위치	(주소) (해당 국제회의복합지구의 명칭 및 위치) (인근 전문회의시설의 명칭 및 해당 시설로부터의 거리)	
집적시설 종류	☐ 숙박시설 ☐ 판매시설 ☐ 공연장 ☐ 박물관 ☐ 미술관 ☐ 전문체육시설	
집적시설 규모	(숙박시설) 「관광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 업종, 객실 수, 면적 표기	
	(판매시설) 「유통산업발전법」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 종류 및 면적 표기	
	(공 연 장) 「공연법」 에 따른 공연장 여부, 객석 수, 면적 표기	
	(박물관 또는 미술관)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유형 및 면적 표기	
	(전문체육시설)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시설 종류 및 면적 표기	
전문회의시설 과의 관계 및 편의시설 등	복합지구 내 전문회의시설과의 업무 제휴 협약 내용	
	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안내체계 및 편의시설 현황	

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
이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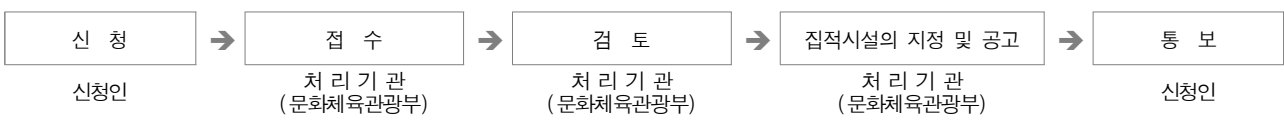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지정 신청 당시 설치가 완료된 시설인 경우: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 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함)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영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지정 신청 당시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의 경우: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영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영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 음
------	--	------------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